

(1)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중소기업들이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권한의 위임 축소(영 제133조제1항)

(1)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시장의 불안요인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민원을 우려한 시·도지사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상황임.

(2) 건설교통부장관의 시·군 또는 구 전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함.

(3)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직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확보 기준 일원화(영 별표 1)

(1) 개발행위허가의 도로확보 기준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기준과 상이하고 비도시지역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개발행위시에 허가대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3)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도로확보 기준이 일원화되어 업무추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 여건을 감안한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9월 8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대통령령 제19037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 토지형질변경 대상으로 이미 승인받은 부지안에서 건축연면적의 증가(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에 비하여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하는 행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1조제3항 본문”을 “법 제11조제4항 본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조제3항 본문”을 “법 제11조제4항 본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법 제11조제5항”을 “법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중 “법 제11조제6항”을 “법 제11조제7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4호중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사용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

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시지가”를 “표준지공시지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 나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3항 본문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40조제5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소속”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소속”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중 “토지의 매수”를 “토지등의 매수”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3호(가)중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을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호(나) 전단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으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자기 소유의 기존의 주택”으로 하고, 동호(다)중 “당해 주택”을 “당해 기존의 주택”으로 한다.

다. 도로 및 광장 |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포함한다.

별표 1 제5호라목의 시설의 종류란중 “공판장”을 “공판장·화훼전시판매시설”로 하고, 동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판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수도권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화훼의 저장·전시·판매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제5호차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溜池)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제5호과목의 시설의 종류란중 “휴게소”를 “휴게소(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표 제7호가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1 제7호나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를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중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에 한한다.

별표 1 제7호라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스키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별표 1 제9호가목(가)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

원·초등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거목의 시설의 종류란중 “농림축산업”을 “농림축산업 및 수산업”으로 하며, 동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종축장 및 잠종장”을 “종축장, 잠종장 및 수산종묘배양장”으로 하고, 동호머목의 시설의 종류란중 “버스차고지”를 “차고지”로 하고, 동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자동차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밖의 기존의 버스터미널안이나 인근 지역에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정류소(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 한한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및 대기실에 한한다.

(라)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별표 3 제33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령”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으로 하고, 동표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제1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폐교된 학교시설을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만큼 추가하여 증축할 수 있으나,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조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제2

호 및 제10조제2항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4조제5호 및 제11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각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15호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고, 제16조제1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호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5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경륜·경정법”을 “「경륜·경정법」”

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제2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을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별법”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제25조제4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6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28조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제30조제1항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중 “한국공항공사법”을 “「한국공항공사법」”으로 하고, 제36조제2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며, 동조제4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2”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제40조제2항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 제2호다목(1)(나)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목(4)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을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며, 동호라목(가)③중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2항제3호”

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다목”으로 하고, 동목(가)④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며, 동표 제3호의 시설의 종류란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4호(나) 단서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4호자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5호다목(가)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호사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고, 동표 제6호다목(가)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표 제7호바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사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본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하며, 동표 제9호가목(다)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호나목(가) 내지 (라) 외의 부분 및 (나) 단서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라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며, 동호사목(가) 전단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호자목(가)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며, 동목(라)중 “도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고, 동목(마)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하며, 동호하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호너목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서목(나)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2 제2호다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표 제4호다목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로 하고, 별표 3 제16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며, 동표 제19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협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표 제25호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며, 동표 제26호중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하고, 동표

제27호중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표 제34호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고, 동표 제35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표 제43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협협동조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나목, 별표 1 제7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의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시·군 또는 구에서는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편의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 낚시터시설 설치요건 완화 및 화훼전시판매장의 설치 허용(영 별표 1 제5호라목 및 차목)

(1) 현재 낚시터시설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화훼전시판매시설은 허용되지 아니함.

(2) 내수면 어업의 쇠퇴로 기존에 양어장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경우 낚시터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화훼전시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3) 경제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경제활동 양태의 변화에 대응하되,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함.

나. 고속국도내 휴게소의 면적제한 폐지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설치 허용(영 별표 1 제1호다목·제5호파목 및 제9호머목)

(1) 국내 물류산업의 발전을 통한 동북아 물류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2) 개발제한구역내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화물차운전자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개발제한구역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함.

(3) 열악한 국내 화물자동차 운송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9월 8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이 재 용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1903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 제안서 검토 의뢰 |
|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및 동법 제10조의 | 시 또는 계획 수 |
|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영의 | 립시 |